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FAQ

Q¹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서로 다른 지역(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A 생산 면적(사육 규모)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²

토지 소유자와 재배자가 다른 경우, 누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입니다. 즉, 생산된 농축산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임금·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작물(가축)을 위탁 재배(사육)한 경우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³

신청 내용과 지자체의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확인 결과 통보를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⁴

금년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은 표지에 안내된 신청기간(2024. 6. 28. ~ 8. 9.)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FTA이행지원센터 **1899-4114**,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2024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2024년 6월 28일 ~ 8월 9일



신청장소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문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FTA이행지원센터(1899-4114)

FTA 피해보전직불금



What?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입니다.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Who?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2015년 1월 1일(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 녹두를 2015년 12월 20일(한·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How?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증명 서류(본인이 준비해야 함)
 1. 2023년에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해당 연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등)
 2.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등)
 3. 축산 품목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가축사육업 허가증)
 4. 타인 소유의 농지(축사)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 자세한 내용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절차

